

의안번호	2215159
의 퇴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6.1.12.
추계번호	25D6860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수를 10명으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원(연평균 6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기록물공개심의회 민간위원 확대	60	60	60	60	60	300	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38조 (기록물공개심의회)	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의원 수를 15명으로 하고 위원 중 10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함 (현행) 위원 수 7명, 민간위원 수 4명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4	안 제38조 (기록물공개심의회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¹⁾의 기록물공개심의회(이하 ‘심의회’라 함) 민간위원 수는 10명으로 하고, 추가되는 민간위원 수는 6명으로 가정
 - 현행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」에서 심의회 민간위원 수는 4명²⁾으로 하고 있으므로, 추가되는 민간위원 수는 6명
 -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³⁾으로 가정
 -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현행법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총 10개가 설치되었음

[표 2]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현황

구분	개수	설치기관
중앙기록물관리기관	1	국가기록원
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	4	국회, 대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지방기록물관리기관	4	서울, 경남, 청주, 이천
대통령기록관	1	대통령기록관
합계	10	

자료: 행정안전부

- 1)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1. ~ 4. (생략)
 5. “영구기록물관리기관”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, 중앙기록물관리기관,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,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.
- 2)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4조(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) ①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- 3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).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1일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

- 안 제38조에 따라 증가되는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,000만원 등 총 3억원으로 추계됨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민간위원 확대	영구기록물관리 기관 수(a)	10	10	10	10	10	—
	추가 민간위원 수(b)	6	6	6	6	6	—
	수당(c)	0.25	0.25	0.25	0.25	0.25	—
	회의개최 횟수(d)	4	4	4	4	4	—
	계(a×b×c×d)	60	60	60	60	60	3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